##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4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준혁·박홍배

윤종오 • 윤후덕 • 이강일

이용우 · 이학영 · 전재수

정혜경·조 국·채현일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.

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,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, 제75조·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·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,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, 제75조·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 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·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국고의 부담) ① 국가는 매      | 제5조(국고의 부담) ①        |
| 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한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 | <u>이 경우 제70조제1항에</u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따른 육아휴직 급여, 제73조의2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축 급여, 제75조ㆍ제76조의2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상을 부담하여야 한다.</u>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|